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4
----------	------

2014년 3월 4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2월 6일, 한명희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2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2014년 2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복지위원회위원 한명희)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및 조성사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양재대)

#### 1) 개요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및 조성사업의 구체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과 일·가족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체계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 &lt; 신설 &gt; &lt; 신설 &gt; &lt; 신설 &gt; &lt; 신설 &gt;</p> <p>제10조(시행규칙)</p>	<p>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b>제1장 총칙</b></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제5조(사업주의 책무)</p> <p><b>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등</b></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8조(실태조사)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p> <p><b>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b></p> <p>제10조(설치 및 기능) 제11조(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3조(보고 및 조사) 제14조(시행규칙)</p>

## 2) 조항별 검토의견

### (1) 정의규정(안 제2조 관련)

○ 개정안의 정의 규정(안 제2조)에서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상위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법적 정의를 재규정 한 것으로,

- 이는 일관성 있는 법적 용어 사용을 통해 조례 해석상 오해를 줄이고 시민의 이해 제고를 위해 보완한 것으로 이해됨.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 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p> <p>2. "일과 가족의 양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있는 조화를 촉진하고 양성평등한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모든 가족친화적 정책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 style="text-align: center;">&lt; 신설 &gt;</p>	<p><b>제2조(정의)</b>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p> <p>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p> <p>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p> <p>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p> <p>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p> <p>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p> <p>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p>

<p>3.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p>	<p><u>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u> 5. (현행과 같음)</p>
---	--

##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안 제6조 관련)

- 개정안 제6조에서는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함)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 제1항)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각 호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안 제2항)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명기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근거 법 조항의 오기를 바로잡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 주고 있는바,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사료됨.
- 또한, 시행계획에 포함될 각 호 사항의 경우, 현행의 조례는 사업주와의 협력 및 민관기관/단체와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 측면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시행계획이 갖추어야 할 기본방향에서부터 상위법에서 규정한 각 분야별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정·보완사항으로 사료됨.

##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u>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p>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p> <p>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p> <p>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u>시행계획</u>(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u>매년</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p> <p>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p> <p>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p> <p>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3) 실태조사(안 제8조 관련)

○ 개정안 제8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에서 2년에 한번 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한 연한을 1년 더 길게 조정한 것인데, 상위 법률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법률 제8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집행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연도를 조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 됨.

- 다만, 현행 조례가 지난 2012년 5월 22일에 제정되었고, 이후 조례 이행을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 번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바, 향후 이러한 늦장 행정 대응 사례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u>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u>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u>조사를 2년마다</u>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u>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u>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u>조사를 3년마다</u>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4)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관련)

○ 개정안에서는 제3장을 새로이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기능, 지원,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중 하위권 수준(OECD평균 61.8%, 우리나라 49.4%)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직장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sup>1)</sup>.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불리한 우리사회의 노동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비정규직 여성의 권리보호 제도 등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 할 것임<sup>2)</sup>.

1) 2010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1.8%에 크게 못 미치는 49.4%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가장 낮고, 이는 기혼여성의 출산·육아기 경력단절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직장맘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것은 임신·출산·육아기 경력단절이 주요 원인임.

2) 여성 취업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4.5%이지만,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총 38.4%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취업여성이 다수라고 할 수 있음.

임금근로자 72.7%	비임금근로자 27.1%
상용근로자 34.5%, 임시 및 일용근로자 38.4%	자영업자 16.2%, 무급가족종사자 10.9%

-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본다면,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고 있는 직장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양한 고충 해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사료됨.
- 이런 가운데, 현재 서울시는 상기와 같은 직장여성의 고충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이 센터에서는 여성의 노동권·모성보호 등 상담 및 분쟁해결과 직장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정보 연계 및 직장맘 커뮤니티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관련한 2014년 서울시의 예산 지원금(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은 총 3억9천만원임.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설치목적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
설치장소	마포구 동교로 162-5
개 소 일	2012. 7. 17
운영방법	민간위탁 (위탁법인: 사단법인 서울여성노동자회)
사 업 비	386백만원(인건비 231, 운영비 87, 사업비 68)
조 직	7명(센터장 1, 기획총괄팀장 1, 사업지원팀장 1, 팀원 4)

-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상과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기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그 근거를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직장맘’의 용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 제2조제5호의 정의 규정에서는 “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하의 여러 조항에서 ‘직장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의뢰 결과에 따르면, ‘직장맘’은 ‘직장엄마’를 뜻하는 것으로, ‘직장엄마’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으므로, ‘직장맘’은 ‘직장엄마’로, ‘직장맘 지원센터’는 ‘직장엄마 지원센터’로 대신하여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안
< 신설 > < 신설 >	<b>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b> <b>제10조 (설치 및 기능)</b> ① 시장은 제9조 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b>제11조 (센터에 대한 지원)</b> 시장은 센터의
< 신설 >	



<p>&lt; 신설 &gt;</p>	<p>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lt; 신설 &gt;</p>	<p><b>제12조 (운영의 위탁)</b>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p> <p>②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p> <p><b>제13조 (보고 및 조사)</b>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p>

### 3) 종합의견

- 상기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및 조성사업의 구체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이상의 검토의견과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
- 다만, 국립국어원의 제안과 같이 ‘직장맘’에 대한 용어는 순수 우리 말로도 그 뜻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장맘 지원센터 등의 용어의 변경을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한명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694
----------	------

발의년월일 : 2014년 2월 6일

발 의 자 : 한명희 의원

찬 성 자 : 조규영, 서영진, 강희용,  
정세환, 이진화, 김종욱,  
정상천, 서윤기, 이강무,  
장정숙, 이상호 의원(11명)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및 조성사업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하고,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 그리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에 관한 기능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화 함(안 제6조).
- 나. 가족친화 조성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
-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규정함 (안 제9조).
- 라.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사항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5. "직장맘"이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 등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및 지원 사업
  3.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
  4. 가족친화 문화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 제3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 제10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9조 제3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3. 일·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사업
  4. 직장부모를 위한 자녀 돌봄 지원사업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기타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보고 및 조사)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